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產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40
----------	-------

발의연월일 : 2018. 10. 30.

발의자 : 김종희 · 이용주 · 최경환  
황주홍 · 유성엽 · 이찬열  
조배숙 · 장병완 · 김수민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탁회사에 수탁된 신탁재산으로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 조치된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동법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된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정한 법률로서 을계정(1945. 8. 16이후 수탁재산)은 동결해제하고, 갑계정(1945. 8. 15이전 수탁재산)은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동위원회에서는 1976년 12월 20일 한일은행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실상 폐지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產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產의處理에關한法律은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